

의안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. 19.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
계획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로붙임
4. 검토의견 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2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연정수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9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5조 및 제6조의
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대전
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
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)

나.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함(안
제5조)

다.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
직무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임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2조내지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내지 제12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
- 복잡한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원센터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의 장을 “대덕특구과장”에서 “경제과학국장”으로 상향 조정하고, 업무 담당자도 “6급이상 공무원”을 “사무관”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이와 함께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센터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전문위원 위촉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
- 사업시행자가 어려움 없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